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 111

제출년월일 : 2000. 4.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해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35호)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장,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전통사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효율적으로 보전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전통사찰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변지역의 시계, 조화 및 녹지보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전통사찰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조례(안)예시(2000. 1. 27. 도문예 86700 - 238호) 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 보호를 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해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
①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2. 자연생태계 해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3. 전통사찰의 수행·포교환경 침해 방지
4.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방지

② 시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주변지역의 경관적 가치

3.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변지역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변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3.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유지 등

- 제9조(주변지역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 및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인생략

경

상 북 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6950-3314 / FAX 6950-3319

문화예술과 과장 김경술 사무관 이태운 담당자 김주현

문서번호 문예 86700-223

시행일자 2000. 1. 21 (년)

공개여부 공개

받음 : 시장·군수

찰조 : 문화재얼두달당실과장

선 률	국장	-19-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1. 21. 10:00	결 재
문 서 번호	번호	223	금 증
처 리 과	문화관광부	금증	기 증
담 당 자	이태운	기증	기증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促進

- 문화관광부 종일 86210-39(2000. 1. 17) 호와 관련입니다.
- 건축법 제8조 제4항이 폐지된 이후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등으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개정된 내용을 시달하니 개정법률의 입법내용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시·군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전통사찰보존법 1부.

2.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예시 1부. 끝.

大韓民國大統領 2000年1月17日
總理 金周煥

경상북도지사

전경 북경문화관광국장 조창현

전통사찰보존법증개정법률

傳統寺刹保存法증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6조의2(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
者는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브호와 鐘鼓 및 風致保存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
이 당해 建築物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 실의를 거쳐 建
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旋行한다.

◇傳統寺刹保存法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

建築許可權者が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傳統
寺刹의 保護와 風致保存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築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시행일 :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0. 4. 13.) <법제처 제공>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의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단체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단체장의 책무) 단체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변지역 보호

제6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 ①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2. 자연생태계 체온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3. 전통사찰의 수행·포교환경 침해 방지
 4.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방지
- ② 단체장은 지역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단체장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 나. 주변지역의 경관적 가치
 3.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변지역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실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단체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단체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단체장은 제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시계가 넓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변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3.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유지 등

- 제9조(주변지역의 적정관리) ① 단체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 및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실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별첨)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 1. 12, 시행 2000. 4. 13)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999. 2. 8 본항 개정)
② ~ ⑤ <생략>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 2. 8 본조 개정)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② ~ ⑩ <생략>

[구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 2. 8 개정 폐지)

⑤ ~ ⑨ <생 략>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 22 호(2000. 3. 6) 게재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 예고기간 : 2000. 3. 6 - 3. 25(20일 이상)
- 제출의견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11호
- 의 안 명 :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2. 제정이유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해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35호)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시장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전통사찰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효율적으로 보전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전통사찰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변지역의 시계, 조화 및 녹지보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전통사찰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영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하여 시장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 전통사찰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 시장은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 전통사찰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시계, 조화 및 녹지 보전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였고
-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전통사찰 보존법이 2000. 1. 12 법률 제6135호로 개정되어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고시할 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